인쇄 취소

Home>대출>상품&가입 프린트하기 확대, 축소 전세대출 영업점

# 군간부전세자금대출(기본)

국방부 군간부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전용 상품

상담예약

### 대출대상

국방부(소속부대) "전세대부(이자지원) 추천서"를 받은 군인으로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

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(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, (주)부영주택인 경우 생략)

※ 공공주택사업자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토지주택공사, '지방공무원법'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 공사 및 공무원연금공단

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

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서울보증보험 보증 가입이 가능한 임차인

### 대상주택

아파트, 연립, 다세대, 단독, 주거용 오피스텔

### 대출금리

[기준일자: 2024.11.29, 단위:연%]

금리구분	금리변동주기	기준금리	가산금리	우대금리	최종금리
신잔액 COFIX	6개월	3.090	1.550	0.000	4.640

- ※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됩니다.
- ※ 2024.11.29 현재, 내부신용(ASS) 1~13등급, 대출기간 2년, 대출금액 2억원 기준
- 이자 산정방법: 최저이율(기준금리 + 가산금리 우대금리) 최고이율(기준금리 + 가산금리)
-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%입니다.
- 연체이자율[대출이자율+연체가산이자율(연3%)]: 최고 연 15%입니다.(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)
- 이자의 부과시기: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한다.

### 대출한도

최대 3.6억원(아래 ①~③중 적은 금액으로 서울보증보험 보증 가능한도 이내)

"전세대부(이자지원) 추천서"의 융자지원 승인금액

임차보증금의 100% 이내

[해당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 + 군간부전세대출금(기본)] 합계가 시세의 100%이내

### 대출기간

임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3년 이내로 하되 임차계약 만기일, 국방부 "전세대부(이자지원) 추천서"의 융자기간, 대출 만기일은 일치시키도록 한다.

※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, 임대차계약내용 변경(종료)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.

###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

만기일시상환, 이자 매월 후취

### 이자계산 방법

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(윤년인 경우 366일)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(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) 전일까지로 한다.(한편넣기) 위 내용에도 물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무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.

- 1.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/ 2.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/
- 3.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/ 4. 대여유가증권

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: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÷ 365(윤년은 366일)

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: 대출금액 × 대출이자율 ÷ 12

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

건별대출(만기일시상환):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, 이자는 일정주기(매1개월 등) 단위로 납부한도대출(마이너스통장):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, 이자는 일정주기(매1개월 등) 단위로 납부

분할상환대출 :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(매1개월 등) 단위로 납부

대출실행 응당일/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/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

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/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, 대출취급시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이용시간

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바로가기 >

#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

건별대출 계약해지 :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

한도대출(마이너스통장방식) 계약해지 :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

계약갱신: 대출금은 약정기일(만기일)에 상환이 원칙이나,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

※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, 고객님의 신용도,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/고객센터 연장/전자금융채널(인터넷뱅킹·스마트폰뱅킹)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.

중도상환 해약금

면제

### 대출관련비용

질권설정통지비용 3만원 손님부담 (군간부전세자금대출(추가)와 동일자 취급하는경우 면제)

### 인지세

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, 은행과 손님이 각 50%씩 부담합니다.

※ 대출관련 인지세

대출금액	인지세액
5천만원 이하	비과세
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	7만원
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	15만원
10억원 초과	35만원

#### 딜쓰시뉴

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(원본) 전입완료된 주민등록등본(대출신규 후 3일 이내) 소득·재직·세대주 증명서류 전세대부(이자지원) 추천서 (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.)

### 금리인하 요구권

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.

### 대출계약철회권

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(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)까지 은행에 서면, 전화,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,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: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, 신규대출·만기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### 위법계약해지권

은행이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,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,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'법 위반사실을 안 날'부터 1년 (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합니다.)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,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.

### 유의사항

이사전 최소 7영업일 전에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
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, 서울보증보험 협약 내용에 부적합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 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,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/신용상의 불이익(압류, 경매 등)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
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.

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

- ※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, 하나은행 고객센터(1599-2222)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- ※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

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(2024.11.29 변경)	<대출금리>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 적용여부: 미적용 변경 전: 신잔액COFIX (6개월변동) + 협약가산금리 1.70% 변경 후: 신잔액COFIX (6개월변동) + 협약가산금리 1.55%
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	<대출한도>
(2022 01 04 변경)	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 적용여부 : 미적용

(	변경 전 : 최대 3억원 변경 후 : 최대 3.6억원
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(2019.11.08 변경)	<대출금리> 변경 전: 잔액COFIX (6개월변동) + 협약가산금리 1.75% 변경 후: (신)잔액COFIX (6개월변동) + 협약가산금리 2.00%
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(2018.12.13 변경)	<대출한도> 변경전 : 최대2억7천만원 변경후 : 최대 3억원

## 변경사항 더보기 🗸

\*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-상품공시-707호(2024.11 26)

\*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: 2024.11.26 ~ 2026.11.25

\* 기준일 : 2024년 11월 29일

인쇄

취소